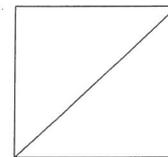


군사Ⅱ급 비밀(SECRET)

관리
번호



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

(2017. 2. .)

國軍幾務司令部

군사Ⅱ급 비밀(SECRET)

目 次

현 상 진 단

단 계 별 조 치

향 후 추 진

현상 진단

< 現 상황 평가 >

-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·촛불 집회 등 보수-진보(종북) 세력간 대립 지속
 - 태극기 집회 : 13회 연인원 1,000만 여명 / 촛불 집회 : 16회 연인원 1,325만 여명
 - 태극기 집회, '평화투쟁과 다른 방법 동원' / 촛불 집회, '탄핵 안되면 혁명' 주장
- 북극성-2호 시험발사(2.12)에 이어 오는 3월 韓·美 KR/FE 연습에 맞춰 北 핵실험·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
- 한편, 현행 계엄계획은 평시 보다 전시 상황에 맞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現 시국에 적용하는데 다소 제한

<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>

-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(종북)세력 준동, 대립 격화
 - * 양측 모두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, 헌법재판소 점거 등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
- 反정부 소요사태(집회·사위 등)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
 - * 무력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反정부 여론 고조
-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
 - * 청와대 등 주요시설 점거 시도로 軍 병력에 의한 시위진압 불가피
- 사이버상 유언비어 난무, 보수 또는 진보(종북) 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·사법 기능 수행 제한, 국정 마비 초래

※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

단계별 조치

단 계	조 치 사 항
① 계엄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● 계엄 선포 요건 검토 / 선포 건의 ● 계엄 시행 준비 착수 ● 군사 대비계획 검토 ● BH·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● 보안 조치
② 계엄 선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계엄 선포 절차 시행 ● 정부 부처(기관) 지휘·감독 ● SC 방안 추진 ● 군사 조치 시행
③ 계엄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집회·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●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● 언론 대응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차단 ●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
④ 계엄 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● 계엄 해제 절차 시행 ●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● 군사 조치 환원

① 계엄 준비 단계

【 조치 중점 】

- 정부부처 긴밀 협의下 계엄 선포 명분 확보
- 계엄 선포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준비
- 계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對언론·국회 보안대책 강구

<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>

-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
* 보수언론에서 계엄선포 필요성 제언,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
-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內 軍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*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軍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
-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對美·中·日 사전 교감

< 계엄 선포 요건 검토 / 선포 건의 >

- 국방부 ‘비상대책회의’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확인
참고 ①
* 「계엄 선포 결심조건표」에 의거 치안상태, 對北 위협 등 면밀 검토
- NSC(안보실장·행자부장관 등) 협의 後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

< 계엄 시행 준비 착수 >

- 국.정책실장 주도 ‘계엄준비 T/F’ 구성下 계엄기구 편성 등 검토
* 北 도발 억제, 국내 치안 질서 회복 등 핵심임무 고려, 계엄사령관 추천안 마련
- 기무사, 합동수사본부 설치 관련 운영지침 마련 및 유관기관 협조
참고 ②
검찰·국정원·경찰·헌병 등
- 계엄사 검찰부·군사법원 설치 및 업무 인수 준비
참고 ③

< 군사 대비계획 검토 >

- ‘계엄임무수행^{참고 4}軍’ 부대 지정 및 규모 판단
 - 8·20·26·30사단 2·5여단 1·3·9여단 및 707대대
 - * 가용부대 : 기계화 4개 사단, 기갑 2개 여단, 특전사 3개 여단(+)
- 중요시설 방호 및 집회·시위 차단 등을 위한 작전계획 수립
 - *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(31개소), 주요 도로 등 ‘목’ 지점 점령
- 합참을 중심으로 KR/FE 연습 고려 下 韓·美對北억제대책 마련
 - * 한반도 전개 美 전략자산 활용, 무력시위 및 對北 경계태세 강화

< BH·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>

- 국무총리실·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
- 對北·치안·해외 정보 실시간 공유 채널 가동
 - * 합.정보(777사·정보사 포함), 국정원, 경찰청, 기무사 등 긴밀 협의
- 계엄선포 시기·범위, SC방안, 정부부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방안 논의

< 보안 조치 >

- ‘계엄준비 TF’는 합참 통제구역內 위치, 외부인 및 출입기자 접촉 원천 차단
- 정부부처간 협의시 對北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
 - * 언론매체 취재 시도 대비 국방부 PG案 마련
- 국회의 對정부 질의 및 설명 요구시 軍 기본입장 설명
 - * 국내 정치상황에 軍의 불개입 입장 견지

② 게임 선포 단계

【 조치 중점 】

- 게임(합수) 시행 기구 신속 설치, 게임 업무 수행체계 마련
- 국내외 게임 시행지지 여론 형성 및 對北억제력 유지

< 게임 선포 절차 시행 >

- 국무회의 심의·대통령 재가 後 국회 신속 통고 및 對국민 공고 조치
 - * 게임 선포 당위성 및 조기 공공질서 회복 목표 제시, 정치권·국민지지 유도
- 게임사령관·합수본부장 등 주요직위자 임명 및 게임(합수) 기구 설치

참고 ㉔

< 정부 부처(기관) 지휘·감독 >

- 게임협조관(48명) 파견 및 정부연락관(58명) 소집, 지휘·감독 체계 구축
- 정부부처 조정통제 훈령 발령, 국가 행정기능 정상화

< 정부 부처(기관) 지휘·감독 >

- (國內)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게임 시행 방침 설명, 국민 불안 해소 주력
 - * 북한의 對南 무력도발 및 국정 개입 시도시 단호한 대응의지 천명

참고 ㉕

- (國外) 외신기자·駐韓무관단 대상 설명회 개최, 국가신인도 유지

< 군사 조치 시행 >

참고 ㉖

- 게임임무수행軍 편성, 중요시설 접근로 차단 및 중요시설 방호 증원
- ‘사이버 대응조직’ 활용, 북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
- 韓·美 긴밀 협의下 美 전략자산 활용, 對北억제력 현시
 - * 장관님, 美 국방장관과 국내 상황 관련 의견 교환 등 확고한 韓·美 동맹강조
- 게임선포 관련 軍의 역할에 대한 對장병 메시지 하달, 군심 동요 방지
 - * 합동수사본부, 주요직위자 관찰 및 軍內 反게임세력 색출·처리

3] 계엄 시행 단계

【 조치 중점 】

- 계엄법에 의거 사회 혼란세력 색출 및 유언비어 차단, 사회질서 회복
- 국회내 일방적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

< 집회·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>

청와대 진입로·광화문·국방부 등

- 특정지역에 대한 휴대폰 전파 방해 및 진입 '목' 지점 봉쇄 등 차단 조치

* 계엄지역 단체행동 금지 특별 공고 및 집회·시위 주동자 색출

참고 ⑧

- 총기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(軍·警) 및 소지자 검거, 폭력시위 확대 방지

참고 ⑨

<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>

- 합동수사본부, 고첩 색출 및 중복세·국보법 위반자 조기 수사 착수
- 국정원·경찰·헌병 등 정보수사기관 역할 조정 및 수사방향 통제

참고 ⑩

< 언론 대응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차단 >

- 보도검열단,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 시행

* 계엄사,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

- 방통위 주관 '유언비어 대응반' 구성, 포털사이트·SNS 게시물 실시간 관리

* 시위·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사이트·SNS·유튜브 등 계정 폐쇄

참고 ⑪

<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>

- 집회·시위 참석 및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 대상 엄중 처리
- 與野 계엄 해제요건에 대한 정치적 합의 유도, 비상국면 조기 안정화 협조

4] 계엄 해제 단계

【 조치 중점 】

- 계엄 해제에 따른 국민불안감 해소 및 비난여론 최소화
- 행정·사법 기능 등 정부부처 기능의 조속한 환원

<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>

- 「계엄 안정도 평가」에 의거 치안기능 회복 및 불안감 해소 등 해제요건 평가
- 국회 및 여론 동향 추이 등 고려, 해제 시기 판단

< 계엄 해제 절차 시행 >

- NSC(안보실장·행자부장관 등) 협의 後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
- 계엄기구 해체 및 행정·사법 임무 환원 등 정부부처 업무 정상화

<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>

- 계엄 해제에 따른 관계부처별 후속조치 방안 논의
- 현재 수사 진행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 조정

< 군사 조치 환원 >

- 계엄임무수행軍 복귀 및 경찰 책임下 집회시위 통제
- 對北상황 관련 군사대배태세는 단계적 하향 조정

향 후 추 진

< 계획 완성 > : 3. 3일 限

- 기본계획 및 우발계획
- 사안별 세부조치 매뉴얼 등

<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> : 탄핵심판 선고일 限

- 계엄(합수) 기구 설치·운영
- 계엄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

< 계엄 선포 여건 평가 > : 계엄 선포 건의 前까지

- 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·이후 보수·진보(중보) 세력 동향 추이
- 탄핵심판 결과 관련 집회·시위 양상 변화 등

< 계엄 시행 준비 착수 > : 탄핵심판 선고일(D)-2일 부터

- 국방부 ‘계엄 준비 T/F’ 가동
- 기무사,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

※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.

참 고 자 료

- ① 평 시 계 업 선 포 시 고 려 사 항
- ② 합 동 수 사 기 구 설 치 간 유 관 기 관 통 제 방 안
- ③ 계 업 군 사 법 원 설 치 · 운 영 계 획
- ④ 계 업 임 무 수 행 군 부 대 편 성 및 운 용
- ⑤ 정 부 부 처 통 제 방 안
- ⑥ 계 업 업 무 수 행 간 외 교 활 동 강 화
- ⑦ 중 요 시 설 방 호 병 력 편 성
- ⑧ 총 기 및 폭 발 물 탈 취 예 방
- ⑨ 계 업 법 위 반 자 사 법 처 리
- ⑩ 언 론 매 체 및 인 터 넷 통 제 방 안
- ⑪ 국 회 에 의 한 계 업 해 제 시 도 시 조 치 사 항

별 지

- ① 계 업 선 포 결 심 조 건
- ② 전 국 비 상 계 업 선 포 건 의
- ③ 공 고 문 제 0 호 (비 상 계 업 선 포 문)
- ④ 담 화 문 제 0 호 (비 상 계 업 선 포 에 따 른 대 국 민 당 부)
- ⑤ 포 고 문 제 0 호 (사 회 질 서 확 립 및 계 업 임 무 수 행 군 임 무 수 행 여 건 보 장)
- ⑥ 훈 령 제 0 호 (계 업 사 령 부 합 동 수 사 기 구 설 치)
- ⑦ 공 고 문 제 0 호 (계 업 군 사 법 원 설 치)
- ⑧ 훈 령 제 0 호 (재 판 권 일 부 위 임)
- ⑨ 결 심 보 조 도 표 (집 회 · 시 위 예 상 지 역 점 령 및 해 산 부 대 편 성)
- ⑩ 계 업 임 무 수 행 군 전 투 편 성
- ⑪ 공 고 문 제 0 호 (각 급 사 법 · 행 정 기 관 계 업 사 령 관 지 휘 · 감 독 시 행 통 보)
- ⑫ 훈 령 제 0 호 (계 업 사 령 부 - 정 부 부 처 간 업 무 분 장 및 업 무 수 행 절 차)
- ⑬ 결 심 보 조 도 표 (주 요 시 설 방 호 병 력 편 성)
- ⑭ 포 고 문 제 0 호 (출 입 국 통 제 및 불 법 총 포 류 밀 반 입 등 엄 정 처 벌)
- ⑮ 결 심 보 조 도 표 (총 기 · 폭 발 물 탈 취 방 지)
- ⑯ 공 고 문 제 0 호 (합 수 본 부, 정 보 및 보 안 업 무 기 획 · 조 정 업 무 시 행)
- ⑰ 훈 령 제 0 호 (고 정 간 첩 등 반 국 가 행 위 자 색 출 지 시)
- ⑱ 공 고 문 제 0 호 (보 도 검 열 요 령)
- ⑲ 훈 령 제 0 호 (보 도 검 열 운 영 지 침)
- ⑳ 훈 령 제 0 호 (사 이 버 공 간 안 녕 질 서 유 지 지 침)
- ㉑ 훈 령 제 0 호 (인 터 넷 개 인 실 명 제 시 행)

① 평시 계엄 선포시 고려사항

□ 現 상황(가정)

-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시 진보·보수세 의한 과격 폭력시위 발생
 - 탄핵 기각시, 진보세력에 의한 청와대 현재 대상 폭력시위 또는 점거 기도
 - 탄핵 인용시, 보수세력에 의한 현재·야당 당사 대상 폭력시위 등 예상
- 일부 언론에서 공권력의 폭력대응 등 편파보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치안 및 사법질서 마비 초래, 계엄 선포 검토

□ 주요 고려사항

- 장관,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종류·지역 및 계엄사령관 임명 검토
 - 비상대책회의는 합참의장, 육군총장, 연.부사령관, 기무사령관, 특전사령관, 수방사령관, 국.정책실장, 정보·작전본부장, 군사보좌관 등으로 편성
 - ☞ 계엄 선포 前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시 계엄 성패와 직결
- 계엄 선포시 고려사항
 - 비상 계엄 :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·사법기능 수행 곤란시, 계엄지역내 모든 행정·사법업무 관할 및 특별조치권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
 - 경비 계엄 :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가 불가능할 경우, 계엄지역내 군사에 제한된 행정·軍 사법업무 관할 및 국민의 기본권 제한 불가
 - ☞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목적 달성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

○ 계엄사령관 결정시 고려사항

-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
 - *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, 합참의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,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
- 재경지역에 국한될 경우, 수방사령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국 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·감독 및 계엄군의 지휘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
 - ☞ 육군총장 임명시, 합참조직 일부를 지휘하는 등 지휘체계 조정 필요

○ 합동수사기구 설치시 고려사항

- 계엄사령관이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국정원경찰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필수적 요건
- 계엄사령관 임명과 동시에 합동수사기구 설치 공고 및 합동수사본부장 임명 등 계엄 선포 초기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
 - ☞ 합수본부 설치 지연시, 민간인 계엄사범 수사처리에 혼란 발생

□ 검토 의견

- 사범·치안기능 마비에 따른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며
- 평시 계엄은 전시 계엄과 달리,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와 계엄군의 사전 주요‘목’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임.

② 합수본부 설치간 유관기관 조정 · 통제 방안

□ 現 상황(가정)

-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內 행정 · 사법 업무를 관장
 - * 계엄법(제 7조) : 계엄선포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
- 이에 계엄사에서는 국정원 · 경찰 등 사법기관 및 행자부 등 행정기관에 계엄사령관이 행정 · 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
-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.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
 - * 국정원법(제 2조) :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,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.

☞ 계엄법과 국정원법간 상호마찰 발생, 계엄 수행간 혼선 발생 가능

□ 검토 결과

- 비상계엄은 제77조 헌법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 계엄법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
- 따라서, 계엄시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
 - 국정원 업무 中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임을 고지

□ 조치 방안

- 국정원 등 유관기관은 계엄사령관 통제를 받아야 함을 공문으로 통보
-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·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,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

③ 계엄 군사법원 설치·운영 계획

□ 現 상황(가정)

- 계엄선포시 계엄관할 지역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사무를 관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의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 지원 필요

□ 계엄 군사법원 지정·운영 사항

- 비상계엄 선포시 국방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

* 계엄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지정

- ① 계엄사령부 보통군사법원(국방부 보통군사법원)
- ② 제1지구계엄사령부 :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
* 지역 계엄사령부 : 예하 각 군단 또는 사단 보통군사법원
- ③ 제2지구계엄사령부 :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
* 지역 계엄사령부 : 예하 각 사단 보통군사법원
- ④ 제3지구계엄사령부 :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
* 지역 계엄사령부 : 예하 각 군단 또는 사단 보통군사법원
- ⑤ 서울지구계엄사령부 :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
* 지역 계엄사령부 : 예하 사단 보통군사법원

○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

-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, 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,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.

비상계엄하 단심제 관련 조항

비상계엄 선포지역에서의 특례규정

-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의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심제 적용시 계엄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하며, 사형 선고의 경우 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, 2심은 계엄고등군사법원, 3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.

- √ 군형법 제1조 제1·2·3항에 규정된 자
- √ 군형법 제13조 3항의 범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
- √ 군형법 제42조 “유해음식물 공급의 죄”를 범한 자
- √ 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6·58조, 제58조의 2~6까지, 제59·78조의 범죄를 범한 자와 같은 법 제58조의 2 및 제59조의 미수범

○ 사건 관할

-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 제534조(특례규정) 소정의 범죄
- 계엄법 제10조(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)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√ 내란 및 외환의 죄 | √ 통화에 관한 죄 |
| √ 국교에 관한 죄 | √ 살인 죄 |
| √ 공안을 해치는 죄 | √ 강도의 죄 |
| √ 폭발물에 관한 죄 | √ 방화의 죄 |
| √ 공무방해에 관한 죄 | √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|
| √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| |
| √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 | |

- 계엄법 제14조(벌칙)에 해당하는 범죄

○ 재판권의 위임

- 계엄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거처리를 위하여 일반법원의 기능회복 정도에 따라 계엄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법원에 그 재판권 위임 가능
-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중요범죄라 할지라도 계엄선포 당시 일반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당해 법원에서 계속 재판할 수 있다.

☞ 단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

4]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/ 운용

□ 상 황

- 탄핵 결정후 시위대가 광화문·시청일대 점거 및 폭력시위로 확산
- 일부 극렬 시위대, 청와대·국방부 등 주요시설 무단진입 시도
- 경찰 등 행정력 부재로 사재폭발물·총기 통제 제한
- ☞ **계엄임무수행군을 운영하여 치안확보 및 공공질서 유지 필요**

□ 법적 근거 : 계엄법 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

□ 가용 부대 : 기계화사단 4개, 기계화여단 2개, 특전여단 3개

기계화사단	기갑여단	특 전 사
8·20·26·30사단	2·5여단	1·3·9여단, 707대대

* 예비대는 시공간적 중앙에 집결대기 : 8사단(육사), 2기갑여단(수색), 1·9여단707대대(現주둔지)

□ 세부 부대 편성

< 집회·시위지역 점령 및 진압 부대 >

- 임무지역별 세부부대 편성(전투력 할당)

	구 분	부 대
집회·시위 지역 점령	광화문 일대(시청, 서울역 등)	26사단, 5기갑여단, 3공수여단
	용 산 역	20사단 1개 중대
	신 촌 일 대	26사단 1개 대대
	대학로 일대	26사단 1개 대대
	서울대 일대	30사단 1개 중대
	여의도(국회)	30사단 2개 대대
주요도로 통 제	틀게이트(서서울, 서울, 동서울)	30사단 1개 중대(틀게이트별 1개 소대)
	한강다리 10개(성산~성수대교)	30사단 1개 대대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와대·광화문 등 핵심지역 진입 도로·한강다리 통제 * 도로통제 : 강변북로(성산~성수)~내부순환로~북부·동부간선로 일부 * 한강다리 : 성산대교~성수대교 구간 10개 다리 	

- 임무지역 투입시기 및 방법
 - 시기 :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
 - 방법 : 기동로 확보 후 차량·장갑차 이용, 집회지역 신속 점령
- 단계별 주요 조치
 - (헌재결정 ~ 계엄선포前) 합참, 계엄임무수행군 운용계획 수립
 - * 계엄임무수행군 작전개념·지침, 전투편성, 준비명령 하달 등
 - * 계엄사령관 포고문 준비 : 집회·시위 금지, 통행금지 지역 설정 등
 - (계엄선포) 계엄군 투입, 집회해산 및 주요지역 사전 점령
 - * 합수본부, 집회 및 시위 주동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색출 처리
 - (계엄해제) 계엄사, 행정·사법 사무 민간 이관
 - * 민간인·단체에 대한 수사 중지 및 민간인 구속자 경찰 인계
 - * 계엄간 운용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인계
 - * 도로검문소 및 교통통제소 등 경찰에 인계

< 주요시설 방호부대 >

- 시설별 세부부대 편성(전투력 할당)

구 분	청와대	국방부·합참	국 회	정부청사	법원·검찰
現 방호력	軍 : 2,400명 경찰: 500명	軍 : 1,500명	경찰 : 180명	경찰 : 180명	자체방호 (청원·특경)
추가 투입	26사 1개 여단	20사 1개 여단	30사 1개 중대	26사 1개 중대	30사 1개 중대

- 단계별 주요 조치
 - (헌재결정 ~ 계엄선포前) 주요시설 방호부대 운용계획 수립
 - * 주요시설별 책임부대 편성, 이동대책 강구, 준비명령 하달 등
 - * 계엄사령관 조치문 준비 : 접근금지 시설 지정, 도로사용 통제 관련 내용 등
 - (계엄선포) 계엄임무수행군 투입, 주요시설 점령 및 방호
 - * 합수본부, 주요시설 파괴·점거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처리
 - (계엄해제) 자체 방호체계로 전환 지원

5 정부부처 통제 방안

□ 상 황(가정)

- 탄핵결정 이후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경찰력만으로 치안 유지 불가
- 시위대에 의한 주요 공공기관 점거 및 정보통신기반 시설/체계 등 파괴로 일부 행정기능 마비되어 국가차원의 사회질서 유지 제한
-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부처에서 軍 통제에 부정적 자세 표출

□ 통제 방안

< 탄핵~계엄준비시 >

- 계엄협조관 및 정부연락관 운용 준비(합참·정부부처)

- 계엄협조관 : 각 군 본부 장교 48명 소집. 24개 정부부처별로 각 2명씩 파견
- 정부연락관 : 29개 정부부처 5급이상 공무원 각 2명씩을 계엄사로 소집

* 계엄사령부에서 정부부처 지휘·감독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운용

- '계엄사령부-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' 훈령 발령 준비(합참)

< 계엄 선포 이후 >

- 계엄협조관·정부연락관 파견, 업무 지휘·감독 및 협조(계엄사·정부부처)

* 계엄선포후 12시간 이내 파견 지시, 24시간 이내 완료

- '계엄사령부-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' 훈령 발령(계엄사)

- 계엄위원회 설치, 계엄사-정부부처간 업무 및 이견사항 조율

* 위원장 : 계엄사 부사령관, 위원 : 軍 및 정부부처·민간분야 선정 인원(20인 이내)

- 발령된 훈령에 의해 계엄사 통제 불응 정부부처 및 공무원 제재

※ 계엄사의 원활한 정부부처 지휘·감독 및 업무협조로 정상적인 계엄시행 지원

⑥ 계엄업무 수행 간 외교활동 강화

□ 現 상황(가정)

- 국내 소요 사태 발생 등 국정혼란에 대해 국내 언론보도를 인용 보도하는 등 주변 강대국에서도 계엄 시행에 대해 관심 집중
* 美·日·露·中 등 국내의 비상사태에 대해 외교채널을 동원, 첩보입수 노력
- 미국의 경우,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 등 긴장 완화를 위해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가능
- 露·中·日도 자국의 경제 등 이익을 고려, 계엄 반대 의사 표출
- ☞ 외신기자들이 국내언론의 편파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함은 물론, 자국의 경제 논리를 고려 계엄 시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

□ 조치 방안

1

계엄 선포 前

- 장관,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하여 現 국내 소요사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동요 방지 당부
- 외교부장관, 주한 외국 대사 대상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사오항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
- 주한 美·中 대사 등 주요국 대상 現 소요사태 관련 계엄 당위성 설명
* 계엄선포 前 국방장관 공관으로 초빙, 보안 유지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

2

계엄 선포 時

- 계엄사령관, 주한 무관단을 소집하여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의지지 당부
- 장관, 주한 美대사 초청하여 美 본국에 계엄 시행 인정토록 협조
- 외교부장관이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(기자·기업인 포함)을 초청,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

3

계엄 시행

- 계엄사령관, 국내 외국인·기업 대상 재산권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 포고문 발령
 - ☞ 합수단, 외국인 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토록 지침 하달
- 주한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 마련, 본국 철수 사전 방지
- 주한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

□ 검토 의견

- 주한 외교관 대상 언론 왜곡 보도 방지 및 계엄 시행의 당위성 등 정부 입장을 홍보
-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, 외신 기자 대상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

7 중요시설 방호병력 편성

상황

- 탄핵 결정후 시위대가 광화문·시청일대 점거 및 폭력시위로 확산
- 일부 극렬 시위대, 청화대·국방부 등 주요시설 무단진입 시도
- 경찰 등 행정력 부재로 사재폭발물·총기 통제 제한
- ☞ **계엄임무수행군을 운영하여 치안확보 및 공공질서 유지 필요**

법적 근거 : 계엄법 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

가용 부대 : 기계화사단 4개, 기계화여단 2개, 특전여단 3개

투 입 부 대	예 비 부 대
20·26·30사단	8사단, 2·5기갑여단, 3·9여단, 707대대

세부 부대 편성

- 책임지역 부여

서울 요도에 주요시설 표시

○ 시설별 세부부대 편성(전투력 할당)

BH	국방부·합참	국 회	정부청사	법원·검찰
26사단 1개 여단	20사단 1개여단	30사단 1개중대	26사단 1개중대	30사단 1개중대

○ 부대기동

• 시설별 기동로

구 분	이 동 로
BH	· 양주 → 구파발 → 구기터널
국방부·합참	· 양평 → 구리 → 동대문 → 용산
국 회	· 수색 → 강변북로 → 서강대교 → 여의도
정부청사	· 양주 → 구파발 → 구기터널 → 광화문
법원·검찰	· 수색 → 강변북로 → 반포대교 → 서초

- 방법 : 선발대·본대·후발대로 기동(주이동로 : 육상, 보조이동로 : 공중)

□ 단계별 주요 조치

○ (헌재결정 ~ 계엄선포前) 주요시설 방호부대 운용계획 수립

- 주요시설별 책임부대 편성, 이동대책 강구, 준비명령 하달 등
- 상황발생 고려 계엄사령관 조치문 준비
 - * 접근금지 시설 지정, 도로사용 통제 관련 내용 등

○ (계엄선포) 계엄임무수행군 투입, 주요시설 점령 및 방호

- * 합수본부, 주요시설 파괴·점거자 등 계엄법 위반사범 처리

○ (계엄해제) 자체 방호체계로 전환 지원

8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

□ 상 황

- 현재의 탄핵 결정(기각·인용)에 대한 반대 시위양상 과격화
- 일부 극렬 시위대에 의한 경찰서 피습 등 총기폭발물 탈취 우려

□ 법적 근거

- 계엄법 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
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□ 단계별 주요 조치

- () 방호태세·총기관리 강화 및 軍·警 합동순찰 실시
 - 총기·폭발물 생산 및 관리 방산업체 방호태세 강화
 - * 자체 전력(특수경비원, 청원경찰, 근무자)의 추가 근무편성 등 경비·보안활동 강화
 - 全軍 탄약·총기관리 강화 및 실샘 철처
 - 취약시설(무기·탄약고, 방산업체, 폭발물 취급소 등) 대상 軍·警 합동순찰
- () 총기·폭발물 취급·유통 원천차단 대책 강구
 - 사제 총포류 일제 수거 및 경찰서 보관, 화약류 제조작업 전면 통제
 - * 보관 총기는 공이를 제거하고, 필요시 군부대에서 인수 및 폐기 조치
 - 총포사 및 화약류 제조업체, 사격장 등 폐쇄 조치
 - 해외로부터 총기·폭발물 등 밀반입 차단

9] 게임법 위반자 사법처리

□ 게임사범 처리 지침

- 反국가사범 등 주요사범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서 직접 처리, 기타 사범은 헌병·경찰·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
- 각 기관에 위임된 사건은 처리 후 결과 통보
- 내·수사 시 각 정보수사관간에 경합될 경우와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정·처리
- 필요시, 협조관 파견 현지 수사 조정·통제

□ 각 기관별 게임사범 수사처리 대상

1

수사1국(기무)

- 포고령 및 게임법 제 9조 특별조치권 중 수사관할 범죄
 - 형법상 내란·외환죄, 국가보안법 위반 죄
 - * 게임 시 同 죄에 대한 민간인 수사관 확대
 - 군형법상 반란·이적의 죄, 군사기밀누설·암호부정사용죄
 -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
- ※ 기무사령부 수사단 건물 내 위치

2

수사2국(헌병)

- 균형법 중 수사1국 업무분장 이외의 범죄
- 계엄법 제 10조 중 내란·외환·국가보안법 외 사회질서 유지를 해하는 범죄
- 군용물 특별조치법 위반죄
-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수행
- ※ 국방부 조사본부 건물 내 위치

3

수사3국(경찰)

-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계엄법 제 10조 위반 범죄 중 수사1국·2국 업무분장 이외의 범죄
-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 수행
- ※ 경찰청 옥인동 수사분실 내 위치

4

수사5국(국정원)

-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, 균형법상 반란의 죄
- 국교에 관한 죄, 국가보안법 위반 죄, 사이버 범죄 수사 활동
- ※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 수사단 건물 내 위치

10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

□ 상 황(가정)

- 보도매체, 탄핵 결정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위대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
 - 한편, 공권력에 의한 시위대 강경진압 모습만 발취하여 왜곡 방송
 - *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은 편집하고 평화시위 모습만 부각
-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여 정부경찰 관련 부정적인 편파보도 지속
 -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동조하고 및 댓글을 게재하는 등 민심 동요

□ 통제 방안

< 탄핵~계엄준비시 >

'16년 기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매체 : 180여 개(기자 1만 여 명)

- 언론매체(TV·신문 등)인터넷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(기무사·방통위)

구 분		보 수	중 도	진 보
언론	TV / 라디오	YTN, KBS, SBS, MBN 채널A, TVN 등	MBC, 연합뉴스, 뉴시스 등	JTBC, 뉴스1 등
	신문	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, 국민일보 등	서울신문, 한국일보 등	한겨레, 경향신문, 내일신문 등
인터넷 매체		뉴데일리, 독립신문, 데일리NK 등	경제투데이 등	프레시안, 오마이뉴스 등

* 계엄발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매체별 성향을 再분석토록 협조

- 보수언론 대상 정부 입장 홍보 및 시위대 폭력성 부각 보도(문체부·방통위)
- 언론매체·인터넷 통제방안 수립 및 보도검열 지침 하달 준비(합참)

계엄사령부 : 본부 및 방송·신문·외신·사이버 등 9개반 74명
 지구·지역계엄사령부 : 계엄사령부에 준하여 편성

- 계엄사 보도검열단 편성 및 계엄선포시 소집 교육 준비(합참·문체부·방통위)

* 현재 보도검열단 편성은 대부분 전시전환 및 동원인원으로 구성→현역으로 조정 필요

< 계엄 선포 이후 >

○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·운영(계엄사·합수본부·문체부·방통위)

- 계엄사 : 보도검열단(본부 및 방송·신문·외신·공연 등 9개반 48명)
* 문체부(61명), 방통위(16명)에 검열 위임 또는 직접 통제
- 합수본부 : 언론대책반(합수본부 7명, 계엄사·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등 총 9명)
- 방통위 : 유언비어 대응 및 대책반(民·官·軍 합동)

○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·운영(계엄사·합수본부·문체부·방통위)

- 보도 금지사항 : 계엄에 유해, 공공질서 위협, 軍 사기 저하, 군사기밀 저촉 내용 등
- 확대 보도사항 : 정부 軍 발표, 반정부 의식 불식,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

○ 보도매체 검열 시행,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(공통)

- 보도 금지사항 : 계엄에 유해, 공공질서 위협, 軍 사기 저하, 군사기밀 저촉 내용 등
- 확대 보도사항 : 정부 軍 발표, 반정부 의식 불식,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

○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(공통)

- 보도 금지사항 : 계엄에 유해, 공공질서 위협, 軍 사기 저하, 군사기밀 저촉 내용 등
- 확대 보도사항 : 정부 軍 발표, 반정부 의식 불식,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 등

○ 시위대 습격 등 대비, KBS→MBC→SBS→CBS 順 방송기능 유지(방통위)

'16. 7월 터키 군부 쿠데타時 계엄군이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접속 차단

○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및 SNS 차단, 유언비어 유포 통제(방통위)

※ 탄핵 결정 직후 상황 및 민심 안정화 차원에서 강력조치 필요

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·운영

구분	보도검열단			언론대책반	통제 매체
	계엄사	문체부	방통위	합수본부	
계	48	61	16	9	.
본 부	5	1	.	.	.
방송반	7	.	4	1	공영방송, 종편 등
신문반	8	25	.	1	중앙일간지, 잡지, 공고물, 간행물 등
통신반	2	4	.	1	종합/전문통신, 인터넷 메일, 유무선 전화 등
외신반	4	8	.	1	국제기구 및 친한단체 교포매체 등
출판반	10	13	.	1	전자출판물, 외국간행물 등
공연반	2	4	.	1	공연대본, 선전물, 각종 집회 발표물 등
전시반	2	2	.	1	미술, 기타 표현물
음반류반	2	4	.	1	CD, DVD, 기타 영상
사이버대책반	6	.	12	1	인터넷, SNS 등

11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

□ 現 상황(가정)

- 사법·치안기능 마비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후,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한 시위 원천 봉쇄 조치에 극렬히 저항
-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
 - *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.(헌법 77조)

□ 주요 조치방안(고려사항)

-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, 계엄 해제 가능
 - *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,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
-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‘해제 요구’직권 상정 원천 차단
 -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‘계엄 해제’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
 - 당정 협의 제한시, ‘해제요구’안 직권 상정 차단 방안 검토
-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
 - 계엄사령부, 집회·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,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
 - 합수단,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

□ 검토 의견

- 국회에서 ‘계엄 해제’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, 당·정 협의를 통해 직권 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